宗教改革의 方向*)

황 상 우

< 目 次 >

Ⅰ. 問題의 提起
Ⅱ. 宗教란 무엇인가?
Ⅲ. 宗教 自由의 內容
Ⅳ. 宗教 自由의 限界와 制限
Ⅴ. 國教否認과 政治分離의 原則
Ⅵ. 宗教改革의 方向

Ⅰ. 問題의 提起

종교는 끊임없이 이어가는 인류의 역사속에서 가장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신적인 장애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가 지닌 내용에 대하여 궁극적인 의미를 마련해 주는 인간의 가장 건전한 활동이라고 본다.[1)]

민족은 종족 또는 혈족과 달라서 언어, 풍속, 종교 등의 문화적인 요소를 같이 누림으로써 일체적 지위를 향유하는 인류의 존중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종교에 의해서 동일한 문화를 누리고 동일한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종교를 믿는 신도가 전체국민의 약 40%에 이르는 바, 그 중 기독교·불교가 신도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양질성을 볼때, 이것은 가정에서 종교의 차이로 인한 전통적인 한국민족의 문화와 관행을 무시하는 행위로 나타나 가정의 파괴 나아가 민족동질성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서양문화식민지국가로 전락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통일에 장애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우리 헌법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명백한 위배가 된다. 또한 1961년 12월 2일 법률 제775호 「대한민국의 공용년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단기년대를 폐지한 것은 민족전통의 역사와 문화를 등한시하고, 서력년호를 쓰는 기독교 교회주의자에 예속되는 반민족 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외래사상이나 종교를 한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속의 사상이나 종교로 수용하여, 민족의 자존과 자긍심

*) 지도교수 : 최 용 기

1) 한모임, 「한여덟째소리」, 하락도서, 1992, 40쪽.

을 높여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민족의 동질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어떻게 종교를 개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제기에 따라, 종교의 개념을 정의하고(Ⅱ), 종교 자유의 내용(Ⅲ), 종교 자유의 한계와 제한 및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석한후(Ⅳ,Ⅴ), 종교개혁의 방향(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인 접근방법과 미국 및 한국판례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하려 한다.

Ⅱ. 宗敎란 무엇인가?

종교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想念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인적인 절대자에 대한 歸依 또는 神과 來世(彼岸)에 대한 內的인 確信의 集合槪念이라고 정의한 학자도 있다.[2]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내면을 정화하는 신념의 힘이라고 하고, 멘지스는 결핍감에서 비롯된 더 큰 힘에 대한 숭배라고 본다. 또한 칼빈은 하나의 신념과 관행의 체계라고 파악하고, 리처드 콤스톡은 종교는 성스러운 외경감이나 신비스러운 환상 등과 같은 조관적인 경험을 언급하는 것일 수 도 있고, 형상(교회 등), 상징(십자가 등), 거룩한 춤, 목욕제계 등의 제의행위 혹은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윤리적 규범과 관계, 보다 인간적인 삶을 위한 이념일 수도 있고, 저승에서의 행복을 얻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다고 한다.[3]

권영성 교수는 종교란 인간이 신의 존재 등 초인적인 것을 신봉하고 그것에 귀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4] 강경근교수는 신이나 피안으로 표현되는 來世에 대한 내적 확신인 신앙을 중심으로 세상의 기원과 목적을 초과학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종교라 하고,[5] 김철수·鄭鍾學·金龍華 교수는 信仰이란 神과 彼岸에 대한 人間의 內的 確信을 말한다고 본다.[6]

중세 기독교는 신에 대해 궁극적 실재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현대의 화이트헤드의 신관은 불변의 창조성에 의해 신과 인간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관계로 파악하여 종래의 신에서 복종하고 애걸하는 신앙관을 탈피했다.

힌두이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는 하나의 궁극적 실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인격신을 부여했다.

---

2) 許營, 「韓國憲法論」, 博寧社, 1990, 386쪽.
3) W.Richard Comstock, The Stwdy of Felihion and Primitive Relihions ; 尹元澈譯, 「宗敎學」, 展望社, 1985, 8쪽.
4)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2, 395쪽.
5) 姜京根, 「憲法學講論」, 일신사, 1993. 352쪽.
6) 金哲洙, 「憲法學新論」, 博英社, 1992, 304쪽; 鄭鍾學·金龍華, 「憲法學」, 責文社, 1989, 325쪽.

불교 역시 인격적 초월신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나, 붓다의 영원성, 자비 혹은 붓다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교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上帝라는 인격 신앙이 뚜렷했으나 후대에는 신보다는 도덕률을 숭상하고, 음양오행에 의해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화체로 파악했다. 신유교는 자연을 밑받침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통일체를 의식하고, 큰힘을 道 혹은 天道라고 보고 이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미완성으로 태어나고, 자기완성을 위한 생활을 추구하다가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을 추구한다면 우리 한민족은 하느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긴지 오래다.

아무튼, 종교는 으뜸가는 가르침이므로 교육의 수단이지 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해 가는 자각의 수단으로 선용되고 기도보다는 맹세하는 자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는 자세로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다.

오늘날 학자들 간의 종교 정의에 관한 학설은 세가지 유형이다.

첫째의 유형은 경험적인 자연의 존재질서와 초경험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질서 간의 차이점을 구별한 것이고,

둘째는, 종교의 존재를 성(聖)과 속(俗)을 구별하는 데에서 찾으려는 것이고,

세째로는, 인간에 있어서 궁극적인 권위와 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중요성만 갖는다고 보여지는 것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정의를 찾으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의 세가지 유형은 각각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번째 정의에서, 초자연적이라든가 초경험적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인 것과 거리가 먼 서구적인 모델에 따라 모든 종교를 규정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초자연적이라는 용어는 과학(자연)과 종교(초자연)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서양의 편협한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든 종교현상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초경험적인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초경험적이라는 개념에는 과학적 관찰이 가능한 경험세계와 과학의 世界 너머에 있는 초 경험적인 종교세계를 구분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양분법적인 구별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나, 상당수의 문화에서는 神도 자연계의 물체들처럼 직접 경험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구분이 적당하지 못하다.

둘째로, 종교를 聖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성스럽다고 하는 감정과 일상적인 감정들, 가령 경이의 감정이나 존경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세번째의 궁극성의 개념도 모호한 것이다. 어떤행위규범을 정당화하려 할 때에는 궁극성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어떤 자연주의자가 어떤 행위 방식을 제시

하면서 그 행위가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신이 그러한 행위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양자는 모두 나름의 궁극적인 정당화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를 따르면 양자를 모두 종교적이라고 해야 한다.

결국 종교의 정의는 개방된 시야와 유연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종교를 정의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어떤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그 용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개념을 민족공동체구성원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이며 으뜸가르침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겠다.

Ⅲ. 宗教 自由의 內容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고 규정했다. 宗教의 自由는 人間의 自由이므로 國民뿐만 아니라 外國人에게도 인정된다. 성질상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종교적 결사 특히 宣教의 自由, 體拜의 自由 등이 인정되며 對國家的인 公權으로서 對私人的 效力도 지니고 있다. 私企業體에 의한 宗教的 行事의 방해 등은 금지될 뿐 아니라, 信仰을 이유로 행하는 해고 등도 금지된다.

1. 信仰의 自由

信仰의 自由는 宗教를 믿고 안 믿을 自由, 信仰할 宗教를 선택하고, 變更하는 自由, 信仰을 告白하거나 信仰告白을 强要당하지 않는 自由, 信仰 또는 不信仰을 이유로 特別한 不利益을 받지 않을 自由 등을 포함한다.[7]

無神論도 일종의 신앙이기 때문이 信仰의 自由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8]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信仰告白의 自由이다. 信仰告白이란 누구나 자기의 종교적인 確信을 말과 글, 음악, 그림, 조각 등의 행동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신앙고백 뿐 아니라, 소극적인 信仰告白 즉 信仰에 대한 침묵내지 信仰不表現의 自由가 포함된다.[9] 따라서 공직취임에 있어서 특정종교의 신앙을 조건으로 하거나 종교적 시험은 금지된다. 또한 國家나 公共團體가 통계상 또는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國民의 宗教實態를 조사할 때에도 자진하여 응하면 모르되 강요해서는 안된다.

---

7) 김철수, 앞의 책, 304쪽.
8) 허영, 앞의 책, 388쪽.
9) 허영, 앞의 책, 388쪽; 김철수, 앞의 책, 304쪽 ; 권영성, 앞의 책, 397쪽 ; 강경근, 앞의 책, 352쪽.

2. 宗教的 行爲의 自由

宗教的 行爲의 自由는 信仰實行의 自由로서 종교행사 내지 宗教活動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이다. 宗教儀式의 自由, 宗教宣傳의 自由, 宗教教育의 自由, 宗教的 集會·結社의 自由가 포함된다. 宗教의 自由가 그 본래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信仰의 自由뿐만 아니라, 宗教的인 確信에 따라 행동하고, 教理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宗教的 實行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한다.

1) 宗教儀式의 自由

일정한 宗教儀式을 통해서 信仰을 실현시키는 自由이다. 종교상의 예배, 讀經, 禮佛, 기도, 聖餐式 등 종교적인 의식과 祝典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유이다. 宗教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은 信仰이지만, 信仰은 단지 內心의 作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外部的 行爲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外部的 行爲의 自由까지 보장될 때에 비로서 종교의 자유는 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宗教的 儀式이나 集會에의 참가를 강제할 수 없다.

2) 宗教宣傳의 自由

자신의 宗教的인 確信을 남에게 선전하고 전파함으로써 信仰을 실현시키는 自由이다. 宗教的인 布教 내지 宣傳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동조자를 규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행위이다. 종교선적의 자유에는 순수한 교리적인 방법으로 타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信仰을 가진 사람을 改宗시키는 自由도 포함된다. 종교의식은 종교상의 교리와 관행에 따라서 행해지는 宗教內的인 行事임에 반하여, 宗教宣傳은 다른 宗教의 信者 또는 無神論者를 그 대상으로 하는 外向的인 行事이다. 宗教의 宣傳은 순수한 방법으로 행해져야하므로 不公正한 宗教宣傳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3) 宗教教育의 自由

宗教의 教理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自由가 바로 宗教教育의 自由이다. 宗教理念에 입각해서 설립된 學校 기타 육영기관에서 宗教教育을 시키는 것은 宗教宣傳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자유선택에 의하지 않고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입시제도에서 종교이념에 입각한 私立學校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신앙침묵의 자유와 소극적인 신앙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금지시켜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의 교육을 시킴으로서 한우리공동체정신을 함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래종교의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양심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민족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대해서 남에게 요구하는 만큼의 인내와 관용을 他宗教에 대해서도 베풀어야 할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헌법 제9조에서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앙고백 및 신앙실행의 자유와 소극적인 신앙고백 및 신앙실행의 자

유가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동시에 보호해야 하지만, 민족문화의 보호는 종교보다도 우위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宗教教育의 自由도 父母의 教育權과 子女의 宗教의 自由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規範調和的인 요청에 맞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4) 宗教的 集會·結社의 自由

宗教的 集會라 함은 같은 信仰을 가진 사람끼리 宗教的인 목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宗教的 結社라 함은 宗教的인 目的으로 結合하여 團體를 조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集會 및 團體에 참가 또는 가입하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는 자유, 결사의 조직, 결사활동의 자유, 강제결사금지, 움직이는 집회 등이 모두 보장된다.

Ⅳ. 宗教 自由의 限界와 制限

宗教의 自由가 인간의 신앙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정신생활영역에서의 個性伸長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宗教의 自由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宗教의 自由 중에서 內面的 自由에 해당하는 信仰의 自由는 法律에 의한 規制나 制限이 불가능하거나 內心領域에 관한 것이므로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에 의한 제약을 받는 외에 法律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宗教的 行爲의 自由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그 제한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서 一夫多妻를 인정할 수 없고, 宗教的인 儀式이라는 美名아래 행해지는 간음행위나 人間祭物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宗教的 集會의 自由를 주장하면서 종교적 집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종교 自由의 內在的 限界를 일탈하는 종교행위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憲法秩序와 他人의 基本權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일반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재적 限界가 있는 것이다. 다만 內在的 限界를 벗어나지 아니한 信仰의 실천행위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인근 주민들을 소리 公害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의 종소리를 한밤중에 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처럼 그 제한의 정도가 근소한 경우에는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國民의 기본의무인 병역의 의무에 반하는 宗教的 兵役拒否는 우리나라 판례(1969. 7. 22. 大判 69도943)는 인정하지 않고, 학설도 인정하지 않는다.[10] 하지만 헌법상 대체역무를 규정한 수 많은 선진국의 예를 볼때 대체역무를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종교적 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11]

---

10) 권영성, 앞의 책, 400쪽.

11) 강경근, 앞의 책, 353쪽.

國民保健의 관점에서 전염병 지역에서 時限附로 宗教的 儀式이나 宗教的 集會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처럼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宗教의 自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이때 宗教의 自由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는 明白하고 現在하는 危險의 原理를 생각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종교의 自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12]

또한 헌법 제20조의 宗教的 目的을 위한 言論·集會를 그 대상으로 하나, 憲法 제21조는 그밖의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言論·集會등의 경우에는 一般的인 言論·集會 등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13]

V. 國教否認과 政治分離의 原則

1. 意 義

國教否認의 原則이라 함은 國家가 특정의 宗教를 國教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國家의 宗教的 中立性의 原則 내지 國教制度의 否認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政治分離의 原則이라 함은 國家와 宗教의 결별을 의미하고, 國家나 政治에 대한 종교의 中立과 國家에 의한 모든 宗教의 동등한 처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大韓民國 憲法 제20조 2항은 「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宗教平等의 原則 내지 宗教中立의 原則은 宗教分離의 원칙의 전제이고, 國教否認과 政教分離의 원칙에 따라 宗教團體에 대한 국가적 간섭은 배제되고, 각 宗教團體에 대하여는 平等한 地位가 보장되어 있다. 이들 원칙이 간접적으로 宗教의 自由를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지만 國教否認과 政教分離의 원칙은 宗教의 自由에서 파생된 原則이지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14] 이에 대해 일부 교수는 국가의 宗教的 中立性의 原則은 宗教의 自由에 당연히 내포되고 있다고 본다.[15] 하지만 우리헌법이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1항과 별개로 규정한 취지 및 政教分離의 原則은 宗教의 自由와 같은 國民의 公權이 아니라 客觀的인 制度로서의 性格으로 파악할 때[16] 종교의 자유속에 政教分離의 원칙이 당연히 내포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宗教의 自由와 國教否認 및 政教分離의 原則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宗教의 自由가 보장되면 국교는 否認되고 政治와 宗教는 분리되며, 國教否認과 政教分離의 원칙이

12) 허영, 앞의 책, 392쪽
13) 권영성, 앞의 책, 400쪽.
14) 권영성, 앞의 책, 401쪽; 김철수, 앞의 책, 306쪽; 朴一慶, 「新憲法學原論」, 一明社, 1986, 401쪽 ; 安溶教, 「韓國憲法」, 考試研究社, 1989, 338쪽.
15) 金箕範, 「韓國憲法」, 1973, 191쪽, 허영, 앞의 책, 393쪽.
16) 김철수, 앞의 책, 306쪽; 권영성, 앞의 책 401쪽.

확립되면 宗教의 自由가 대체로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國教를 否認하고 政教分離를 해야만 宗教의 自由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이들 原則은 아직도 절대적 원리가 아니라 단지 相對的 原理에 지나지 않다.

國家와 宗教의 분리라고 할지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완전한 분리의 입장을 취하고, 英國과 스페인은 國教制度를 채택하고, 국교이외의 宗教에 대하여 광범한 종교적 관용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있다. 또한 서독, 이탈리아 등은 教會를 憲法上의 公法人으로 하여 國家와 法的으로 대등한 입장에 서게 하면서 고유한 분야의 사무는 양자가 각각 처리하고, 경합된 분야의 사무는 양자의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國教否認과 政治分離原則의 內容

1) 國教의 否認

國教라 함은 國家가 특별히 지정하여 각종의 특권을 부여하거나 특별히 보호하는 종교를 말한다. 우리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國教를 指定하거나 어떤 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특권을 부여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修正憲法 제1조에서 「國會는 宗教의 수립에 관한 어떠한 法律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비종파적이고 비강제적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종교적 신념 위에 정부의 권력과 재정적 뒷바침이 있을 때에는 약소종교에 대한 강압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뉴욕주의 한 지방위원회가 학교장에 대하여 기도문을 매일 일과 개시전에 교사입회아래 教室에서 낭독할 것을 지시한 사건에서, 더그라스(Douglas) 大法官은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기도를 指導하는 教師가 공무원이고, 公立學校이면 결국 州의 財政이 기도에 관련되어 여러 종파 사이에 분규를 가져온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보았다. 한편 스테바르트(Stewart) 大法官은 어린이에게 기도에 참가하는 것을 拒否하는 것은 우리 國民의 精神的 전통에 참여하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라 하여, 그런 정도의 기도는 국민정신의 전통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예로서, 大法院에서도 開廷때마다 職員의 한 사람이 「하느님은 합중국과 이 명예로운 법원을 수호하신다」라고 말하고, 國會兩院도 매일 開會 때마다 기도로 시작되고, 와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케네디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취임사에 있어서 「神의 보호와 救護」를 바란다고 말하고, 國歌에도 「하느님이 구호하신 나라」라는 말이 들어 있고, 1865년 사용한 동전에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문구가 새겨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뉴욕주 국민학교기도정도는 우리 국가사회에서 통용되는 精神的 儀禮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宗教의 수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17] 또한 네바라스카(Nebraska)州 議會의 開會式에 議會에서 선출되고 州政府에서 봉급이 지급되는 牧師가 기도함으로써 會期가 시작되는 것은 宗教

의 自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8]

大法院은 美國國會의 開會式에 목사기도로써 시작되는 것이 修正憲法이 채택된 이래 거의 200년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시행되어 오고 있고, 이와 같은 관행이 100년이상 네바라스크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開會기도는 하나의 관행으로서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大法院은 판시했다.[19] 이것은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사실상 국교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영국이나 이태리 등도 그 예외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독교에 의해 문화식민지화 되어 있고, 각종 외래 종교들이 여호와, 알라 등을 한민족 고유의 최고신칭인 하느님을 도용함으로써, 민족정기가 흐려져 있고, 한얼이 빠진 상태라 민족공동체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용한 김일성 사상이란 종교로 한민족의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宗教는 동일한 민족이 공동체형성을 위해 필요한 최고의 으뜸가르침이라고 제시한 바에 의하여, 숙명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宗教의 자유를 누려야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헌법이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국처럼 국교를 두어 민족의 전통문화를 장려하면서, 다른 종교에게도 광범한 종교적 관용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宗教의 政治干涉禁止

宗教는 政治에 간섭할 수 없다. 宗教團體가 政治活動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종교인이 소속종교단체의 통제나 지시를 받음이 없이 개인적으로 政治活動을 하거나, 宗教團體와 별도로 동일한 종교인들이 결사를 조직하여 政治活動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宗教儀式에서의 政治活動은 制限된다는 것이 大法院判例이다.[20]

3) 國家의 宗教教育禁止

國立學校에서 特定한 宗教教育은 할 수 없다. 그러나 一般的인 종교교육은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에 대하여 宗教的 行爲를 강제하거나 특정 종교에의 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할 수 없고, 공직취임에 있어서 특정종교의 의식에 따르는 선서의 요구도 금지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한민족의 으뜸가르침의 내용을 지닌 종교를 국교화하고 어린시절부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우리공동체정신을 함양하는 민족종교교육을 시킨 후, 외래종교를 수용하고, 관용하는 인격체를 형성하여 우리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항구적인 세

17) Engel et al. V. Vitale et al. 370 U.S. 421(1962); 文鴻柱, 「基本的 人權硏究」, 海巖社, 1991, 184쪽
18) Marsh V. Chambers, 463 U.S. 783(1983).
19) 문홍주, 앞의 책, 192쪽.
20) 大判 1973, 5, 22, 73 도 535.

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4) 國家에 의한 特定宗教의 優待와 差別의 禁止

國家가 특정종교를 보호하거나 억압하기 위하여 財政的·經濟的 특혜를 부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정교분리원칙상 國家는 非宗教性을 요구하므로 내용이 어떠하든지간에 종교단체에 국한된 특별한 보호는 無宗教의 自由와 균형을 잃으므로 부당한 것이다.

VI. 宗教改革의 方向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민족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족통일을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가르침으로서 통일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宗教가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으뜸가르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전통민족문화정신에 바탕을 둔 민족종교를 國教로 정하고, 宗教教育을 국가가 실시하여 민족동질성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성직자를 국가고시제에 의해 선발해야 한다.

기독교의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전도사 3년을 거친 후 임명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다. 불교는 승가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한 기간을 수련한 후 임명된다. 신학교 및 승가학교의 경우, 특정 종교인에 의해 교직자들을 양성하여, 타종교에 대한 편협성과 배타성을 배워 인간의 정신을 향도할 수 있는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대학 각종 관련 종교학을 전공한 자 중에서 의사, 판사처럼 국가고시로 선발하여 자질을 높여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임금을 국가에서 각종교인의 세금으로 보장해 주어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종교재산의 관리를 국가가 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회나 사찰기금으로 출연하는 헌금은 세금을 면제하고, 종교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면세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종교사업을 일탈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교재산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불교재산관리는 타종교 재산과의 형평에 비추어 부당하다.

엄청난 헌금들이 종교복지사업으로는 10%미만 사용되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동산투기, 사채놀이, 기업체운영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은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한국이라는 政治·社會的 조건 아래 놓여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종교인들의 상황과 여건은 한민족의 상황을 초월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성직자의 종교인은 한국의 위상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기독교·불교 때문에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의식인 조상에 대한 제사, 관행, 굿 등이 미신으로 취급되고 민족문화가 말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종교를 믿으면서 민족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때 가능한 것일까?

國教를 두어 민족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성직자들의 자질 및 재산을 국가가 관

리하여 성직자의 품위를 유지하고,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불교로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종교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어떠한 종교나 사상일지라도 한민족을 옳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생활규범의 역할을 못하는 한 개혁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宗教의 自由는 보장하되, 민족과 國家의 존립에 지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헌법 제20조 2항은 개정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姜京根, 「憲法學講論」, 일신사, 1993.
2)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1992.
3) 金箕範, 「韓國憲法」, 1973.
4) 金哲洙, 「新稿憲法學新論」, 博英社, 1992.
5) 文鴻柱, 「第6共和國韓國憲法」, 해암사, 1987.
6) 文鴻柱, 「基本的 人權硏究」, 해암사, 1991.
7) 朴一慶, 「第六共和國新憲法」, 法經出版社, 1986.
8) 安溶敎, 「韓國憲法」, 考試硏修社, 1989.
9) 尹世昌, 「新憲法」, 一湖閣, 1983.
10) 尹元徹譯, 「宗教學」, 展望社, 1985.
11) 崔鎔基, 「한철학과 韓國憲法」, 法曹閣, 1990.
12) 한모임, 「한여덟째소리」, 河洛圖書, 1992.
13) 許 營, 「韓國憲法論」, 博英社, 1990.
14) Clifford Geertz, "Religion as a Cultural System", in M Banton, ed.,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London, 1966.
15)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ns Life, London, G. Allen, 1915.
16) Robert Baid, "Interpretive Categories and the History of Religions" Historyand Theory, 1968.